

VISA Cash 표준 가맹점 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VISA Cash의 발행기관과 VISA Cash의 가맹점이 VISA Cash를 이용하여 거래를 함에 있어서 양자의 권리, 의무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맹점은 이 약관에 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VISA Cash를 발행하거나 향후 발행할 모든 발행기관과 브이캐시주식회사에 대하여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VISA Cash”란 IC(Integrated Circuit)칩이 내장된 카드에 전자기호 형태의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물품구매나 용역의 이용시 사용할 수 있는 지급 수단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선불카드의 형태를 취하는 현금 대체수단을 말합니다.
2. “VISA Cash의 발행기관”이란 VISA Cash 회원약관에 따라 VISA Cash를 발행하고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과 VISA Cash를 이용한 거래를 결제하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이하 “발행기관”이라고 합니다.)
3. “회원”이란 VISA Cash 회원약관에 따라 발행기관에 VISA Cash를 신청하여 발급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4. “가맹점”이란 이 약관에 따라 가맹점가입을 신청하여 발행기관으로부터 가입을 승인 받은 업소, 시설 등을 말하며, 일반상거래 및 전자상거래 가맹점을 포함합니다. 단, 전자상거래 가맹점만을 구분하여 지칭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가맹점”으로 특정하여 표기합니다.

제3조(계좌신고 의무 등)

- ① 가맹점은 대금결제 및 발행기관과의 거래를 위하여 가맹점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를 발행기관 및 브이캐시주식회사가 정한 소정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② 가맹점은 VISA Cash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합니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단말기의 구입, 설치 및 유지 등의 비용은 가맹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③ 전자상거래 가맹점은 VISA Cash Merchant Payment Gateway (이하 “MPG”라고 합니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MPG의 설치 및 유지 등의 비용은 전자상거래 가맹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④ 가맹점은 단말기 또는 MPG의 설치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발행기관 및 브이캐시주식회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발행기관은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가맹점이 해당 단말기 또는 MPG로 VISA Cash를 취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단 이 기간은 발행기관 및 브이캐시주식회사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⑤ 가맹점은 다른 VISA Cash 가맹점 명의로 VISA Cash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⑥ 가맹점은 발행기관 및 브이캐시주식회사가 정하는 VISA Cash 가맹점 표지를 점포내외 또는 전자상거래 가맹점 웹사이트의 고객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부착 또는 게재하여야 합니다.

제4조(단말기 또는 MPG의 사용)

- ① 발행기관 및 브이캐시주식회사는 가맹점에 VISA Cash의 취급방법 및 단말기 또는 MPG의 사용법을 자세히 알려주어야 하며 가맹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② 가맹점은 회원이 VISA Cash 사용시 그 처리가 항상 순조롭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단말기 또는 MPG의 사용방법의 숙지, 유지 및 관리 등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 ③ 가맹점은 단말기 또는 MPG를 불법, 부정한 목적 등에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④ 가맹점은 단말기 또는 MPG의 보안장치에 관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제5조(VISA Cash의 처리)

- ① 회원이 가맹점에서 물품 및 용역의 대금을 VISA Cash로 지불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점은 회원의 VISA Cash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안됩니다. 단,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VISA Cash 사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원이 대금지불을 위해 VISA Cash를 단말기 또는 “PC 연결형 VISA Cash 판독기(이하“PC Reader”라고 합니다.)”에 삽입하는 접촉방식이나, 단말기에 연결되어 있는 RF 판독기(이하 “Dongle” 이라고 합니다.)를 통한 비접촉방식으로 VISA Cash의 잔액이 차감되고 단말기, 전자상거래 가맹점의 주문데이터베이스 또는 Dongle에 거래내역이 기록되는 시점에서 회원은 대금결제를 완료한 것으로 합니다.
- ③ 가맹점은 회원에 대하여 현금 등의 타 결제수단을 이용한 고객보다 가격, 서비스 등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안됩니다.

제6조(VISA Cash의 취급금지)

회원이 제시하는 VISA Cash가 위법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제작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VISA Cash를 취급해서는 안됩니다.

제7조(반품 등의 경우 대금처리)

발행기관은 VISA Cash로 대금지불을 완료한 거래에서 제공된 물품 및 서비스의 하자 등으로 반품 또는 교환하는 경우에도 VISA Cash에 의한 대금지불을 정상적인 것으로 처리하며, 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이 발행기관 및 브이캐시주식회사가 정한 양식에 따라 “동거래 발생일자, 금액, 가맹점 상호 및 등록번호, CAN(Card Application Number)” 등을 기재하여 브이캐시주식회사에 거래일 이후 2영업일 이내에 팩스 또는 전자메일로 통보하면, 동 거래에서 발생한 VISA Cash 가맹점 수수료를 소정의 확인절차를 거친 후 통보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부터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제8조(직전 거래취소)

가맹점은 VISA Cash를 이용한 거래를, 거래 발생 즉시(카드와 단말기에서 별도의 추가 거래가 있기 전) 동 거래에 한하여 취소가 가능합니다. 단, 본건 시행을 위한 IC카드 적용방법 및 단말기소프트웨어 개발 전까지 “직전 거래취소”는 기능이 유보될 수 있으며, 동 기능은 전자상거래가맹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소가 불가능할 경우 가맹점이 발행기관 및 브이캐시주식회사가 한 양식에 따라 “동거래 발생일자, 금액, 가맹점 상호 및 등록번호, CAN(Card Application Number)” 등을 기재하여 브이캐시주식회사에 거래일 이후 2영업일 이내에 팩스 또는 전자메일로 통보하면, 동 거래에서 발생한 VISA Cash 가맹점 수수료를 소정의 확인절차를 거친 후 통보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발행기관으로부터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제9조(회원과의 분쟁)

- ① VISA Cash에 의해 판매하거나 제공한 상품 및 용역에 관한 모든 분쟁은 가맹점과 회원간에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② 회원과 VISA Cash에 의한 거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가맹점은 이의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발행기관의 중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10조(위·변조 책임)

- ① 발행기관은 제6조의 경우와 아래에 해당하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위·변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가맹점이 이 약관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인하여 VISA Cash의 위·변조사고가 발생한 경우
- ② 위·변조된 VISA Cash의 부정사용 조사를 위하여 발행기관이 요청한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도 발행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거래내역 전송의무)

가맹점은 거래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반 시중은행 영업일(이하 “영업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5영업일 이내에 거래내역을 전송하여 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발행기관은 거래가 발생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거래내역을 전송 받지 못한 거래에 대해서는 대금 지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수수료)

- ① 가맹점은 VISA Cash 취급과 관련하여 발행기관 및 브이캐시주식회사가 정한 소정의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② 가맹점은 고객에게 전항의 수수료 및 기타 VISA Cash 거래와 관련한 수수료를 전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13조(대금청구 및 결제)

- ① 가맹점은 회원이 결제를 완료한 금액에 대하여 발행기관 및 브이캐시 주식회사는 가맹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 가맹점 자격을 정지 시키거나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VISA Cash, 단말기 또는 MPG가 부정 사용된 경우
 2. 단말기 또는 MPG의 무단 대여·양도·담보제공 등의 경우
 3. 이 약관이나 관계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다른 채무로 인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임의경매 등의 대상이 되거나 기타 가맹점의 신용불량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되는 등 가맹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제1항의 사유로 발행기관 및 브이캐시주식회사가 가맹점 자격을 정지시킨 후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거나 동일한 행위가 2회이상 반복되는 경우에는 발행기관 및 브이캐시주식회사는 가맹점의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③ 발행기관 및 브이캐시주식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 발생시 가맹점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즉시 통지하며, 가맹점이 탈퇴를 원하는 경우 이를 발행기관 및 브이캐시주식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14조(분실, 도난)

가맹점에 설치된 단말기의 분실 및 도난으로 인한 가맹점의 손실에 대하여 발행기관은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양도금지 등)

가맹점은 그 본 가맹점 계약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고 가맹점 가입으로 획득하는 일체의 유형 및 무형의 권리를 발행기관 및 브이캐시주식회사에 대한 동의 없이 양도, 전매 또는 기타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16조(변경사항 신고)

- ① 가맹점은 가입시 신고한 상호, 대표자, 예금계좌 등의 중요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발행기관 및 브이캐시주식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② 가맹점이 전항의 신고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발행기관 및 브이캐시 주식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③ 가맹점이 주소 및 상호변경 등의 신고를 소홀히 하여 발행기관 및 브이캐시주식회사로부터의 통지가 연착하거나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상 도달하여야 할 시기에 통지가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7조(유효기간)

- ① 이 약관은 가맹점이 이에 기명날인하고 발행기관 및 브이캐시 주식회사가 승인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가맹점 자격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은행은 가맹점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가맹점에 통지합니다
- ② 제1항의 통지에는 “가맹점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가맹점 계약이 1년간 연장 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합니다
- ③ 가맹점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장을 원하지 않음”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가맹점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연장됩니다.
- ④ 제1항 내지 3항은 제18조에 의한 가맹점 자격정지, 상실 등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제18조(자격정지·상실 및 탈퇴)

- ① 발행기관 및 브이캐시주식회사는 가맹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 가맹점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1.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VISA Cash, 단말기 또는 MPG가 부정 사용된 경우
 - 2. 단말기 또는 MPG의 무단 대여·양도·담보제공 등의 경우
 - 3. 이 약관이나 관계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4. 다른 채무로 인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임의경매 등의 대상이 되거나 기타 가맹점의 신용불량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되는 등 가맹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제1항의 사유로 발행기관 및 브이캐시주식회사가 가맹점 자격을 정지시킨 후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거나 동일한 행위가 2회이상 반복되는 경우에는 발행기관 및 브이캐시주식회사는 가맹점의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③ 발행기관 및 브이캐시주식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 발생시 가맹점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즉시 통지하며, 가맹점이 탈퇴를 원하는 경우 이를 발행기관 및 브이캐시주식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④ 은행은 제1항부터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우편 등 방법으로 30일전까지 가맹점에게 통보 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자격정지·상실 및 탈퇴시의 처리)

- ① 자격정지·상실 및 탈퇴시까지의 VISA Cash 이용대금 결제는 제11조 내지 13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② 자격정지·상실 및 탈퇴의 경우 가맹점은 가맹점 표지를 철거하여야 하며, 단말기 또는 MPG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③ 발행기관은 자격정지·상실 및 탈퇴 이후 발생한 거래의 대금청구에 대하여 지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20조(신용정보제공)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6-약관-145호(2016.4.18)

- ① 발행기관은 정당한 VISA Cash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가맹점의 정보를 신용정보기관 및 업체에 제공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이에 동의합니다.
- ② 가맹점과 회원이 VISA Cash 거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행기관은 가맹점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③ 발행기관은 가맹점의 신용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를 신용정보기관과 관련업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으며, 가맹점은 이에 동의합니다.

제21조(비밀보장)

가맹점은 VISA Cash 취급으로 알게 된 회원의 개인정보 또는 거래에 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제22조(약관 위반시의 책임)

발행기관과 가맹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3조(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제24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